

민·군 공항 통합 건설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TK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민간공항 위탁·공동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- 부지조성과 활주로, 기반시설 등은 민·군 통합 설계·시공 가능
- 이주민 공공임대주택 공급,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절차 등 보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, 이하 국토부)는 민·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구 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5월 1일 공포·시행한다.

○ 4월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군 공항 사업시행자에게 위탁·공동 시행이 가능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 법률 위임 사항*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민·군 공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.

*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('24.6월 주호영의원 대표발의, '25.1.31 개정·신설, '25.5.1 시행)

○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규정,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, 지역기업 우대조건 협의절차도 보완하였다.

□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국토부장관은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시설의 부지조성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는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건설 사업을 종전부지 지자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-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종전부지 지자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, 수행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
○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**이주자의 원활한 정착** 등을 위하여 **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('23.1.12)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·세입자를 대상으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***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
*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철거민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가능

○ 종전부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**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**,
 ①개발사업 시행자의 **명칭·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**을 변경하는 경우,
 ②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**착오** 등에 따라 **면적을 정정**하는 경우는 종전부지 지자체와의 **사전협의**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**절차를 간소화**한다.

○ 사업시행자가 **공사·물품·용역** 등의 계약 체결에 대해 **지역기업 우대기준**을 정할 시, 계약주체 등을 고려하여 **기재부 또는 행안부와 사전협의**를 거치도록 하였다.

□ 국토부 **신윤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**은 “현재 **군 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**되었고 **민간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**를 앞두고 있다.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**민·군 공항의 통합 건설이 가능**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**설계·시공과정의 효율적 추진방안**에 대해 **국방부·대구시와 논의해 나갈 것**”이라고 밝히고,

○ “**무엇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지도록 공항시설 설치기준 준수와 조류 충돌방지 대책** 등에 대해서도 **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**”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	책임자	단 장	신윤근 (044-201-5220)
		담당자	사무관	곽희종 (044-201-5212)

